

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5. 19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원장

□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의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제2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출석일시 : 2003. 6. 11. ~ 6. 12. (2일간)
-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·
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
공무원중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장, 본부장, 중평출장소장
이상 간부공무원